

##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[재]공고

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,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1. 12. 6.

**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**

### 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채용직급	인원	기간	담당업무	근무부서
재무·회계 분석(자문)	지방행정주사 (일반임기제)	1명	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개발사업 사업성 및 재무·회계분석</li><li>◦ 개발사업시행자 개발이익 환수 관련 지원</li><li>◦ 조성원가 산정방법 적정성 분석</li><li>◦ 투자유치기업 재무분석 자문</li><li>◦ 현안사업 협약서 등 회계자문</li></ul>	기획정책과 (453-7812)
투자유치 (바이오·헬스케어)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1명	1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바이오·헬스케어 분야 국내외 기업유치</li><li>◦ 바이오·헬스케어 분야 전략·기획·육성 및 지원</li><li>◦ 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</li></ul>	신성장산업 유치과 (453-7653)

\* 근무 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(★최초 1년)

### 2. 근거법령

-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
### 3. 응시자격 요건(판단기준일: 최종시험일)

#### 가.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국 적 : 대한민국
- 거 주 지 : 제한 없음
- 성별 및 연령 : 제한 없음(남자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)

####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#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 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## 나. 자격요건 :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

채용분야	채용직급	자격기준
재무·회계 분석(자문)	지방행정주사 (일반임기제)	「공인회계사법」제3조(자격)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. * 우대조건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, 개발이익 분석, 투자협상 업무 경력이 있는 자
투자유치 (바이오·헬스케어)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* (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) -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에서 바이오·헬스케어 관련분야 투자유치·국제통상 경력 ※ 외국어 능력(영어 면접 시행)

- ※ 경력의 계산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- ※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**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**

## 4. 보수수준

- 직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 원칙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요건 등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
  - 일반임기제 공무원 : 직급별 하한액 원칙

구 분	상한액(천원)	하한액(천원)
6급(상당)	76,686	51,098
7급(상당)	62,675	44,514

\* 지방공무원보수규정 『별표13』의 연봉 한계액, '21. 1. 5. 시행

-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-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
  - \*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응시원서 제출서류에 의거 응시원서 접수 시 작성 제출

## 5. 시험방법 및 일정

### 가. 시험방법

#### ○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\*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.

#### ○ 인·적성 검사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인·적성 검사 시행, 면접시험에 활용함으로 공직 적격성, 직무능력 검증
-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험 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인·적성검사 시행

#### ○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여부 등 종합적 평가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전체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정점수의 합계가 높은 사람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

- 1)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, 창의력·의지력과 발전가능성, 기타 예의·품행과 성실성 등
- 2) 불합격 기준 :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와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

\* 투자유치 분야는 면접시험 전 외국어 인터뷰 진행(예정)

## 나. 시험일정

구분	기간
응시원서 접수	2021. 12. 20.(월) ~ 12. 22.(수)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인·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	2021. 12. 31.(금) 전·후
면접시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
최종합격자 발표	별도 공지

- 1) 공고 및 발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([www.ifez.go.kr](http://www.ifez.go.kr)) IFEZ소식(고시공고)에 게시합니다.
- 2)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인·적성 검사를 실시, 접속 사이트 문자 확인 후 사이트 접속하여 검사 실시합니다. (접속 사이트 개별 문자 발송)
- 3)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,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4)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
- 5)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6. 응시원서 접수

- 기 간 : 2021. 12.20.(월) ~ 12.22.(수), 3일간 (09:00~18:00)
- 접수방법 \*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  - 방문접수 :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 총무인사담당(G타워 31층)  
(접수시간) 09:00~18:00 \*접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    - \* 인천광역시 수입증지(응시수수료)는 G타워 민원동 1층 민원실에서 판매
    - \* 5급 1만원 / 6,7급 7천원 / 8,9급 5천원 / 라급·마급 5천원
  - 등기우편 접수  
(접수인정)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해 유효함
    - \* 응시분야 직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·동봉
    - \* **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 불가,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마감시간(16:30) 유의**
  - (주소) (22004)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(송도동) 경제청 운영지원과 총무인사담당  
(응시표) 면접 당일 현장에서 배부(서류전형 합격자에 헌함)
  - \*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.

## 7. 제출서류 (별지 서식 첨부)

연번	서류항목	비고
1	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	서식 1
2	응시원서 1부 *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* (방문접수) 인천경제자유구역청 1층 민원실에서 구입 * (우편접수) 우편통상환 구입 · 동봉(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마감시간 유의)	서식 2
3	이력서 1부 *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미인정)	서식 3
4	자기소개서 1부	서식 4
5	직무수행계획서 1부(서식의 작성요령 참고, A4 용지 3매 내외 작성)	서식 5
6	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	서식 6
7	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	서식 7
8	개인정보제공(이용) 동의서	서식 8
9	대학교(학사) 이상의 졸업증명서 사본 1부 (해당자에 한해서 제출) <b>*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</b> (가급적 3월 이내) 발행분 제출 *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	-
10	기타 각종 자격증,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 사본 1부 <b>*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</b> 발행분을 원칙으로 하며, 발급일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근무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을 유의 *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<b>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</b> (시간할 계산) <b>*근무기간·부서·직책·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함</b> *증명서에는 <b>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·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</b> *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(법인사업자등록증 등) *경력기간 산정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	서식 9
11	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(경력증명서 제출지에 한함)	-

	<p><b>가.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</b>         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        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</p> <p><b>나.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</b>        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국세청의 '폐업자에 대한 입증 등의 정보나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</p>	
12	<p>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        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 (수상실적, 연구실적, 어학능력 등)</p> <p>*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, 연구실적 등)의 경우          반드시 한글번역본(공증필)을 첨부하여 제출</p> <p>*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        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</p>	-
13	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 안내 및 가입의사 확인서	서식 10

## 8. 응시자 주의사항

- 응시자는 채용 자격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,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 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,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 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,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인·적성검사 결과를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사용하오니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문자를 받지 못한 응시자는 운영지원과 총무인사팀 (032-453-7132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예정이며,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전에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(<http://gosi.incheon.go.kr>)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([www.ifez.go.kr](http://www.ifez.go.kr)) IFEZ소식(고시공고)에 공고합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 취소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▶ 채용절차 관련 : 운영지원과 총무인사팀(032-453-7132)
  - ▶ 직무내용 관련 : 근무 예정부서로 문의 바랍니다.